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

2026년 11월 13일

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8호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”를 “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”를 “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30조제3항”을 “교육감은 법 제30조제3항”으로, “회계연도마다”를 “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금액을 매 회계연도”로, “할

일정금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

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교육시설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향후 교육시설 투자수요
2. 교육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·유지보수·개축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
3. 해당 회계연도 및 향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 전망
4. 그 밖에 기금의 안정적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교육감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시 향후 교육시설 투자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·재해로 긴급한 교육시설 복구가 필요한 경우
2. 학생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
3. 국가정책에 따라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
4. 그 밖에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